

2026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2026년 제1회 양구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구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비고
합 계			14명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3명	
	농업	일반농업	2명	
	시설	일반토목	6명	
		지적	1명	
	공업	일반기계	2명	

2.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거주지, 자격증)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9급(사회복지)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40분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9급(일반농업)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60분	
9급(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9급(지적)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60분	
9급(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60분	

-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① 202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6.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략)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마. (생략)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 6. (생략)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 4. (생략)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 4. (생략)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 6. (생략)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해당 직렬(직류) 자격증 보유
- 기능사 자격자: 해당 직렬(직류)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직렬	직류	자격(면허)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4.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6. 10. 13.(화) ~ 11. 4.(수) [22일간]	'26. 11. 2.(월) ~ 11. 4.(수) [3일간]	필 기	11. 6.(금)	11.14.(토)	11.19.(목)
		면 접	11.19.(목)	11.26.(목)	11.30.(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https://www.yanggu.go.kr>) '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4.(수), 09:00 ~ 18:00 /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본청 2층)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등기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2026. 11. 4.)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원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접수처(033-480-222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 양구군 민원실 「양구군 수입증지」 구입(인증)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동봉
 - ※ 받는사람은 기재하지 않으며, 정부수입인지 불가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4) 이력서[붙임 2] 및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4]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1부

7)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마. 응시수수료의 환급 안내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양구군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6. 가산점 적용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 취업지원대상자

- 1)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특전과 관련 유의사항

- 공통적용 가산점 제도(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등)는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임용대상자 제외)가 6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033-480-22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